

농업기반시설 관리권

[] 신규
[] 변경
[] 말소

등록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등록 권리자	단체명			
	주소			
등록 의무자		농림축산식품부장관		
농업 기반 시설	① 명칭			
	② 설치	시행기관(단체)		
		소재지		
		준공 연도		
		설치비 천원		
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				
등록의 원인				
등록원인 발 생 일				
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 관리권의 (신규, 변경, 말소)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직인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	2.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사본 1부	없음

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(신규, 변경, 말소)신청 안내	
제출 및 처리기관	농림축산식품부
작성방법	① 명칭: 농업기반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. ② 등록의 원인: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근거법규	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5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」 제43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)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

처 리 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